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43
----------	-------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최민희 · 윤건영 · 김우영
한민수 · 조인철 · 이재강
박해철 · 김태년 · 이성운
김남국 · 김영환 · 임미애
이정현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케이블·위성 등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에 한정하여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체계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저해되며,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개념을 전파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한 영상·음성 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영역·시장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콘텐츠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등으로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OTT와 유튜브에 대해서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킴(안 제2조).
- 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 공정성·공익성, 편성의 자유와 독립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소유제한, 결격사유, 외국자본 출자 제한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성 및 공적 책임에 관한 심의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 라.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시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공적 책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마.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에 대한 허가·승인, 변경허가, 재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대표자·보도책임자 임명절차 및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 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관한 승인·신고 제도, 편성·광고·

협찬 규율, 보편적 시청권 보장 체계 등을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

사.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허가·승인 체계를 마련하고, 설비 보유 플랫폼의 기술기준, 채널 구성·운용, 재송신, 설비 미보유 플랫폼·공유플랫폼의 투명성 확보 및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7조부터 제63조까지).

아.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재난정보 전파, 장애인 시청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4조부터 제73조까지).

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금지행위,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체계를 규정함(안 제74조부터 제86조까지).

차.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해외진출·전문인력 양성·지역 및 중소기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 및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87조부터 제96조까지).

카.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종전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유지, 벌칙의 경과조치, 지역사업권의 경과조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부칙을 마련함(안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시청각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과 시청자의 권익 증진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청각미디어”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음성·음향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공영방송서비스와 지상파방송서비스의 경우 음성·음향만을 제공하는 것(이하 “라디오방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란 시청각미디어콘텐츠(시청각미디어가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영상 및 음성·음향 또는 그 복합체로 이루어진 내용물)를 편성·배치하거나 채널을 구성하여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영방송서비스: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이하 “한국방송공사”라 한다)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송문화진흥회”라 한다)가 최대출자자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한국교육방송공사”라 한다)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나. 지상파방송서비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다만, 공영방송서비스는 제외한다.

다. 보도채널: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보도를 행하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라. 공동체라디오방송: 지상파방송서비스 가운데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출력되는 공익목적의 라디오방송

4. “시장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란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이외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말한다.

5.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할 때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채널

2) 상품소개판매채널

3) 보도 및 상품소개판매채널 이외의 채널로서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

나. 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시청자가 선택한 시점에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배치 또는 목록을 구성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다.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 또는 사업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제작·편집·편성한 시청각미디어콘텐츠(이하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라고 한다)를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6.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각미디어채널 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나.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구축하지 아니하고서 시청자에게 시청각미디어채널 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의 정보통신망(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공급받은 시청각미디어채널 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제공플랫폼서비스”라고 한다)

2)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알고리즘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중개·공유하는 서비스(이하 “공유플랫폼서비스”라고 한다)

7.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은 영상·음향·음성·문자·부호·숫자·도형·도표·이미지 등으로 이루어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편성 또는 배치의 개별적인 단위가 되는 내용물을 말한다.

9. “편성”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의 종류·내용·분량·시각 및 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배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의 종류·내용·분량·목록 및 위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채널”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연속적인 흐름 또는 이를 반영한 정보체계로 이루어진 콘텐츠의 제공 단위를 말한다.
12. “채널 구성”은 시청각미디어채널의 종류·목록·번호를 정하는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를 말한다.
13. “유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4. “시청각미디어광고”는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콘텐츠를 말한다.
15. “협찬”이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협찬고지”란 협찬을 하는 자(이하 “협찬주”라 한다)로부터 협찬을 받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포함하여 그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17.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편성·배치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다만,

알고리즘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편성·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8. “보도”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편성·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19.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청각미디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청자의 권익증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자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제공이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청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 ② 누구든지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서비스 제공 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 책임자의 자율적인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 책임자를 선임한다.

④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 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시청각 미디어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4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민주적 여론형성을 저해하거나 지역·세대·계층·성별간의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범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따른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제작·편성·배치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공동체의 조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사회교육기능을 높이고, 유익한 생활정보

를 확산·보급하며,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과 문화 다양성 제고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바른 언어 사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2장 시청각미디어의 기본사항

제9조(소유제한 등)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 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④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서비스 및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⑥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⑧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서비스,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다른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를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⑨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⑩ 정당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⑪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⑫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⑮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⑯ 특정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도서산간 등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수신이 어려운 지역은 제16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⑱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이하 “플랫폼서비스”라 한다) 또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24조, 제45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0조 및 제4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법인 대표자 또는 시청각미

디어콘텐츠서비스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이하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라 한다)사업자에 대하여서는 제1호와 제7호를 제외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을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보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제11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

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이나 그 밖의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③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보도채널 및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는 제외한다)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보도채널 및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는 제외한다) 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

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⑤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자,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호에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외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지분의 소유자
2.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식·지분의 소유자

제12조(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제공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규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개인·가족·공동체 등 사회구성원의 보호 및 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연대와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권익증진과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8.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
 9. 문화의 창달과 다양성 구현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사항
 12. 환경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3. 소비자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생명 존중과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시청각미디어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시청각미디어서비스광고의 허위성 및 소비자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
 17.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18.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④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서비스제공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분야별 특성과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해당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시청각미디어광고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자체심의)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보도채널은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이용자제작 콘텐츠서비스는 제외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① 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시청각미디어광고 판매를 위탁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연간 시청각미디어광고 매출현황
2. 시청각미디어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별
연간 매출액

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제17조(재산상황의 공표)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의 투명한 회계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재산상황 제출 자료 및 시기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산상황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

제18조(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① 공영방송은 민주적 공론장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은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영방송은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과 서비스 및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야 한다.

④ 공영방송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시청각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영방송은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와 가치를 창달하여 전파할 수 있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공영방송에 대한 지원) ① 제18조에 따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7항, 제8항에서 정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방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이뤄진 경우 세부내용 및 성과와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과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허가·승인) ① 공영방송서비스 또는 지상파방송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보도채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변경허가·변경승인 등) ①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보도채널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분야의 변경

5.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구역의 변경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

송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대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허가·재승인) ①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보도채널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20조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보호업무 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4. 시청자위원회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평가
 5.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6.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④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허가·승인의 취소 등) ①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

하는 때에는 허가·승인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한 때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1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21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7. 제85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유지·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9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8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절차·시청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처분)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보도채널사업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보도채널사업자가 제24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보도채널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보도채널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편성 위원회를 둔다.

1.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2.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보도채널사업자

②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29조(편성) ① 한국방송공사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보도와 오락에 관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와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는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자체 제작하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③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④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와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는 제70조에 따른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시청 지원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재원 등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⑥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⑧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시청각미디어프로그

램 중 국내에서 해당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30조(광고) ①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는 제36조에 따라 시청각미디어광고를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4장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제31조(승인·신고) ①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소개판매채널을 행하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변경승인·변경신고) ①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용자제작 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4. 시청각미디어콘텐츠분야의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용자제작 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실시간 시청각미디어채널 서비스사업자에 한정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33조(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용자제작 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대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승인 등) ①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승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해당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보호업무 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횡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각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4. 시청자위원회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평가
5. 시청각미디어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승인 당시의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③ 제20조제5항 규정은 제1항의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편성과 배치 등) ①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가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여야 하는 시청각
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범위,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대
상이 되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청각미디어광고 등) ①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
업자는 시청각미디어광고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
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시청각미디어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
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
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과 시청각미디어광고
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시청각미디어광
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1. 프로그램 외 광고 :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프로그램 시작 전후 또는 프로그램 중간에 별도의 광고 시간
대를 구성하여 송출되는 광고
2. 프로그램 내 광고 :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
그램 속에서 제품, 서비스, 브랜드를 노출하는 광고

3. 그 밖의 광고: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거나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어려운 광고

③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시청각미디어콘텐츠는 이를 시청각미디어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주제작사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프로그램 내 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⑤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4항에 따른 프로그램 내 광고가 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규정과 제15조에 따른 자체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프로그램 내 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외주제작사는 제15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자체심의를 필요한 기간 전까지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내 광고가 포함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청각미디어광고만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및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서비스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 외주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프로그램 내 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37조(협찬)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협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협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제작 협찬

2. 공익적 성격의 행사 협찬

3. 공익적 성격의 캠페인 협찬

4.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관련 시상품 또는 경품 협찬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외주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

2.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
(해당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의 협찬은 제외한다)

3. 시청각미디어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자의 협찬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이용자제작 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

외한다) 또는 외주제작사는 협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2. 협찬을 받아 제작·제공이 완료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다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3. 시청자·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을 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4. 협찬주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38조(협찬고지)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자신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협찬고지에 관한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이에 따라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보편적 시청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권을 다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③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중계권자등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계권자등으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제공수단(이하 “보편적 제공수단”이라 한다)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보편적 제공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중계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중계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중계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중계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제공내용의 기록·보존) ①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일지에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제공내용(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 제공결과를 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제작 시청각

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제공(재송신은 제외한다)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공 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공일지의 기록 및 제공결과의 제출시기 등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별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및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신고) ①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이하 “공유플랫폼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수취하는 수입 및 공유플랫폼 내에서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공유플랫폼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의 책무) ① 이용

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공유플랫폼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제작·제공하는 콘텐츠에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현물이나 금전적 협찬 또는 후원을 받았거나,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식별 가능하도록 콘텐츠 내에 표시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과장의 방법으로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홍보하거나 구매의 유도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콘텐츠의 제공 중단 명령을 받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5조(승인취소 및 업무정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

어컨텐츠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서비스를 휴업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9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컨텐츠서비스사업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가 해당 서비스의 시청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의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제47조(허가·승인 등) ①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이하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라 한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 심사 시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무선국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이용하여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로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얻은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신고 등) ①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2. 시청자의 권익보호

3.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법인명 또는 상호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대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재허가 등) ①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47조제7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실시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평가 결과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횡수 및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4.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시청각미디어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허가 당시 부과된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 심사기준,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이 법에서 정하는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이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이 법에서 정하는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제한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7. 제57조제7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이 법에 따라 발하여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유지·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이 법에 따라 발하여진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이 법에 따라 발하여진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 제공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1조(지역사업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참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지역사업권의 설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기술기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술기준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공동체 라디오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같다) 설비 보유 플랫폼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신고 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설비 보유 플랫폼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4조(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설비 보유 플랫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설비 보유 플랫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심사기준·절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조(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에 따라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7조(플랫폼서비스의 이용약관 등) ①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 중 유료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유료 플랫폼서비스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2.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유료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유료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채널 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 플랫폼서비스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2. 유료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결합하여 묶음으로 제공하는 상품의 요금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2.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⑥ 유료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료 플랫폼서비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특정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②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④ 사업구역별로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정보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채널에서는 지역 보도 이외의 보도 및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분야의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재송신) ①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서비스의 채널(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사업구역 안에 해당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사업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채널서비스사업자가 여러 개의 지상파 방송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채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청각미디어 콘텐츠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채널서비스사업자별로 지정·고시하는 1개 채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에 따른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채널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채널서비스사업자의 지상파방송채널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2.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무선국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가 지상파 방송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방송구역 외에서 해당 지상파방송채널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은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외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외국에 설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를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를 국내에서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시청각미디어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시청각미디어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의 존재 여부 및 그들이 외국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채널의 내용이 이 법에 따른 심의규정 및 「형법」, 「저작권

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는 재송신되는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의 내용이 이 법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의 내용이 제3항을 위반한 때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의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의 채널을 재송신하는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의 채널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사업자의 채널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제61조(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신고) ① 온라인 플랫폼서비스사업 등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2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등) ①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의 배치, 추천, 중개, 공유를 위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을 정하여 공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설비 미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의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콘텐츠가 추천·중개·공유되는 방식에 관하여 시청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의 내용, 수립 절차, 공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 ①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가 추천·중개·공유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2. 부당하게 타인을 차별하거나 혐오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이용자 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3.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조장·독려하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공중보건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5.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6.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 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②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에 대하여는 삭제하거나 전체 이용자 또는 청소년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3.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노출·유통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받은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 ③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 및 삭제 조치, 이용자 보호 및 시청자 불만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공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불법 또는 유해한 시청각미디어콘텐츠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내역을 매년 1회 이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유플랫폼서비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제11장(벌칙)에 따른다.

제7장 시청자의 권익증진

제64조(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책무)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시청자의 권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청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시청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6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시청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
2.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

3. 보도채널을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4. 상품광고판매채널을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
5.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불만처리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6.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④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의무) ① 제6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6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6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 공공영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운영과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시청자 보호업무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의 기준과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0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통한 재난정보의 전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재난정보의 전파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정보를 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71조(장애인 시청지원)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 및 시청각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가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2조(시청자 역량강화 및 시청각미디어 교육의 지원) ① 정부는 시청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청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시청각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에 대한 시청각미디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청각미디어 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청각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둔다.

제73조(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및 시청자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시청각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 3. 각종 시청각미디어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 4. 그 밖에 시청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공정경쟁의 촉진

제74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정부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이하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라고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 평가는 제75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제75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7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절차·방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공급)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다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7조(금지행위)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시청자미디어채널의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청 또는 이용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5.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6.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7.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8. 상품광고판매채널을 제공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광고판매채널에 편성을 조건으로 상품광고판매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9.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따라,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외주제작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또는 권리의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을 위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1항과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7항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제78조(손해배상)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시청각 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지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79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외주제작사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률·행정·경영·회계·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⑥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조정외 개시) ① 제79조에 규정된 자들 상호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채널 및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송출 또는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구역과 관련된 분쟁
4. 중계시청각미디어서비스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5.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합의 권고)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80조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2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0조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8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제80조 각 호의 조정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80조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제83조(조정절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조정의 효력 등) ① 제83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

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② 조정은 제83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5조(조정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1. 제81조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3. 당사자가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제84조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5.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유지·재개 명령)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사업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에 관한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2. 제59조에 따른 동시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인 분쟁사건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은 제80조 및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장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의 지원

제87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기술, 문화 및 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시책 기본방향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 기반시설 조성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 기술개발, 표준화 및 연구기반 조성
4.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5.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해외 진출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과 수출
6.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7.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활용 제고
8.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에 대한 세제 지원
9. 중소 규모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
10.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국제협력 지원
11.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청

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88조(시청각프로그램 제작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 미디어프로그램 제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제작의 창업 지원
 2.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 지원
 3. 창의적, 실험적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제작, 송출, 유통 지원
 4. 공공·공익적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제작, 송출, 유통 지원
- ② 그 밖에 시청각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의 확산 및 실용화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의 산학협동 촉진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5.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에 필요한 사항

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해외 진출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해외 진출 관련 국내외 기술 및 시장, 정책 분석
2.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 관련 유망 사업 발굴 및 확산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해외 진출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국내외 유통 관련 마케팅·홍보 지원

②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해외 진출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유통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

영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학교 등 교육기관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②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세제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3조(지역 및 중소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진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및 중소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를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 및 중소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 송출, 유통시설 구축
2.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3. 경영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③ 그 밖에 지역 및 중소기업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국제협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시청각미디어 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5조(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 ① 시청각미디어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청각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등 지원
2. 시청각미디어 산업 육성·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
3. 시청각미디어 관련 기업·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4. 시청각미디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5. 시청각미디어 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 확산 등
7. 시청각미디어 산업 동향 분석, 통계 작성, 정보 분석 및 서비스 발전 등에 관한 사업

8. 시청각미디어 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 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 간 협력 증진, 자율규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운영,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97조(시정명령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단,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 또는 신고 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서비스 사업자·지상파방송서비스 사업자·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98조(제재조치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14조에 따른 심의규정 및 제37조제2항과 제3항의 협찬, 제38조제3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해당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또는 해당 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당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또는 해당 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2.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책임자·해당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또는 해당 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3. 주의 또는 경고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 시청각미디어콘텐츠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서비스 사업자는 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퇴폐 및 폭력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경우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

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송출·전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상품소개판매채널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판매채널 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청문)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 제34조 및 제49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24조,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제60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00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신고, 재허가·재승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는 제95조의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79조제3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01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31조·제47조 또는 제23조·제34조·제4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20조·제31조·제47조 또는 제23조·제34조·제4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1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21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자
 7. 제22조제3항, 제33조제3항 또는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8조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한 자
- ② 제9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

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콘텐츠편성책임자의 성명을 서비스 제공 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9. 제21조제2항, 제32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광고를 한 자
12. 제33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시청각미디어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프로그램 내 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4. 제36조제7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 내 광고를 판매한 자
15.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6.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및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8. 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9.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20. 제53조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21. 제56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2. 제57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한 자

23.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24.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25.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26.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27.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28. 제59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제59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하는 자.

29. 외국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60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0.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3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32.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33.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34.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35.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36. 제7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7. 제7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8. 제9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9. 제9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송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40. 제98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107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④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방송법」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받은 허가·승인·등록

· 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지역사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따라 종전 사업구역에서 방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방송법」에 따른 사업구역의 설정·변경·취소, 그 밖에 사업구역에 관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업권의 설정·변경·취소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생활권 변화, 행정구역 개편, 전송망 구성 등 제51조제2항에 따른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종전 사업구역을 같은 항에 따른 사업구역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